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(약칭: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)

[시행 2020. 2. 21] [행정안전부령 제161호, 2020. 2. 21, 일부개정]



소방청 (119구조과) 044-205-7320

제16조(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)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·운영하되,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
2.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·통제
3.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
4.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

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·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. <개정 2020. 2. 21.>

1. 신속기동요원 : 대응계획부
2. 자원지원요원 : 자원지원부
3. 통신지휘요원 : 구조진압반
4. 안전담당요원 :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
5. 경찰과건 연락관 : 현장통제반
6. 응급의료과건 연락관 : 응급의료반

제18조(자원집결지의 설치·운영)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
2. 선박터미널 및 공항
3. 체육관 및 운동장
4. 대형 주차장
5.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

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·운용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<신설 2020. 2. 21.>

1. 자원집결반
2. 자원분배반
3. 행정지원반
4.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

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21.>

1.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
2. 안전,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
3.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
4.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

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0. 2. 2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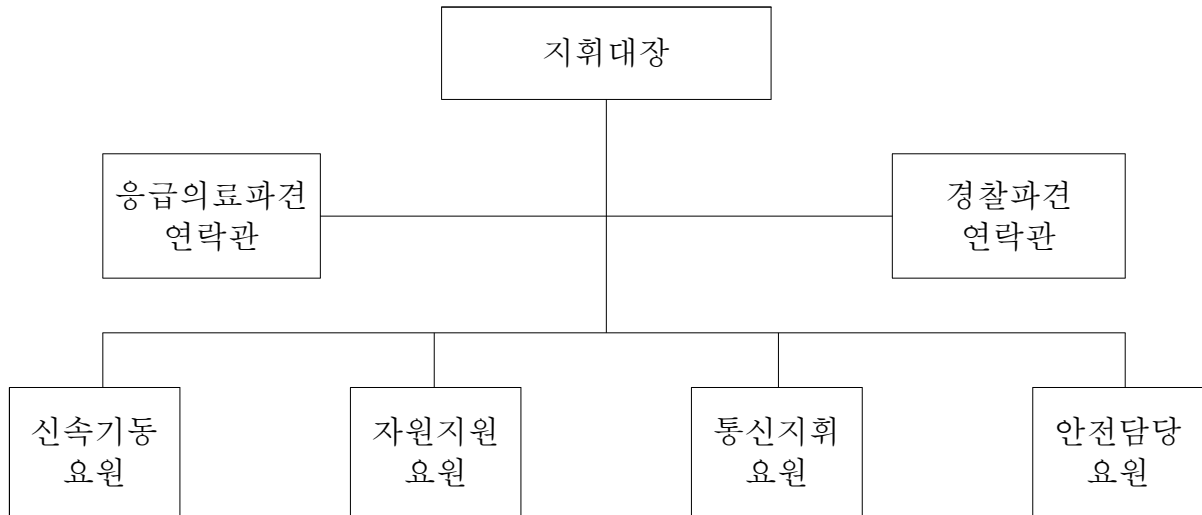
부칙 <제161호, 2020. 2. 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5] <개정 2020. 2. 21.>

긴급구조지휘대(제16조제1항 관련)

1. 구성



2. 임무

구분	주요 임무
지휘대장	가.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 시 현장지휘·조정·통제 나. 통제단 가동 전 재난현장 지휘활동 등
응급의료과견 연락관	가.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체계 가동 요청 나. 사상자 관리 및 병원수용능력 파악 등 의료자원 관리 등
경찰과견 연락관	가. 재난현장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나. 재난발생 지역 긴급교통로 확보 및 치안유지 활동 등
신속기동요원	가. 재난현장과 상황실(지휘부)간 실시간 정보지원체계 구축 나. 현장상황 파악 및 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 정보 제공 등
자원지원요원	가. 자원대기소, 자원집결지 선정 및 동원자원 관리 나.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협정체결기관 동원요청 등
통신지휘요원	가. 재난현장 통신지원체계 유지·관리 나. 지휘대장의 현장활동대원 무전지휘 운영 지원 등
안전담당요원	가.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나. 재난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